

「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의거하여 해당 기간을 연장하고,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(안 제3조제6항)
 - (당초) 2026년 12월 31일 → (변경) 2031년 12월 31일
- 나. 용어 및 인용사항 정비(안 제3조, 제12조, 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, 관련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기금의 법적 성립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사회복지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·운용되는 재원으로서, 자활사업단 용자사업, 장학사업 등 지역의 인재 양성 및 복지 증진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번 존속 기한 연장은 그 법적·행정적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됨.
- 다만, 기금의 존속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의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연장된 기한 동안 기금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전개가 담보되어야 할 것임.
- 특히, 현행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누적된 총 기금 조성액의 규모에 비해 실제 집행되는 장학사업의 수혜 범위와 예산규모는 다소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됨.
-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기금 축적에 치중하기보다는 저출생 및 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되는 제반 현실을 고려하여, 향후 장학금 지급 시 적용되는 성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기금 자산의 수혜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기금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